

제155호

### 행정명령

#### 뉴욕주 예산 또는 후원에 의거한 노스캐롤라이나 주로의 출장 금지

뉴욕주는 모든 주민들의 민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미국 전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;

1945년, 뉴욕주는 차별을 반대하는 주 법률을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하였고, 그 법률은 이제 연령, 인종, 종교, 피부색, 출신국, 성적 지향, 군필 여부, 성별, 혼인 여부 및 장애를 포함하여 많은 기준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합니다;

사람들이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기반으로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강력한 주정부 승인 관심사입니다;

뉴욕주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포함해 보호 계층에 대한 차별에 부지불식간에 재원을 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주 정부가 인정하는 강력한 관심사입니다;

노스캐롤라이나 주는 트랜스젠더의 성 정체성에 상응하여 이들의 욕실 및 탈의실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, 이 주의 반차별 보호로부터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제외시켰으며, 현지 지방정부가 이러한 보호장치를 레즈비언, 게이,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(LGBT) 시민에게 확대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;

자유 사회에서는 LGBT 시민을 포함해 모든 시민들의 평등권을 보호하고 소중히 가꿔야 합니다;

자유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지가 일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;

공정성을 진흥하고, 뉴욕주 주민의 복리를 보호하며, 차별과 싸우는 것이 뉴욕주의 정책입니다;

따라서 본인 **Andrew M. Cuomo**는 뉴욕주 지사로서 본인의 직무, 뉴욕주 헌법 및 뉴욕주 법령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능과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**명령하고 지시합니다**:

- LGBT 시민을 차별하기 위한 근거를 대는 법률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발효되는 동안 모든 기관, 부서, 이사회, 청 및 위원회는 뉴욕주 예산 또는 후원에 의거한 노스캐롤라이나 주로의 출장 요청을 모두 검토한다.
- 그러한 곳으로의 출장이 뉴욕주 법률의 집행을 위해, 이전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, 또는 공중 보건, 복리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한 공공 예산 또는 후원의 그러한 출장을 금지한다.

공공 예산의 출장에 대한 뉴욕주의 금지는 즉각 발효되며, 그러한 법률이 계속 유효한 동안 지속됩니다.

이천십육년 삼월 이십팔일 Albany시에서 주 옥새  
및 본인의 자필로 서명한다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